



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2 110-710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5550 USA

이민, 약혼, LIFE 법령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수속 안내

당대사관은 귀하에게 허가된 이민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귀하가 이민, 약혼 또는 Life 법령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이 안내서의 지시 사항들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날짜를 지켜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www.asktheconsul.org 또는 www.travel.state.gov에서 많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사는 언제든지 비자발급 여부의 결정을 위해 추가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동봉한 양식 DS-230 제 1부를 각각 가족수대로 작성하고 서명하셔서 지금 이민 비자계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하십시오.

여권은 비자발급시 최소한 8개월 이상 유효하며 본인 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한국 이민 신청자는 외교 통상부 웹사이트 www.mofat.go.kr에서 여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증명서. 웹사이트 <http://www.travel.state.gov/visa/reciprocity/index.htm>에서 각 나라 경찰증명서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나라라고 여겨지면 적어도 자신의 국적이 소속된 나라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미국 제외)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 하였을 경우 해당국의 경찰 증명서를 귀하의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찰 증명서는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요합니다. 수형사실이 있는 분은, 수형사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KNPC)는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가 국적을 불문하고 신청자 개인이 모든 지역의 경찰서에서 본인의 모든 범죄수사 기록을 직접 신청하면 발급 됩니다. 한국경찰서에서 외국인의 신원조회는 신청자의 대한민국 거주증명서나 여권에 의거하여 조회합니다. 한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새로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아랫단에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 직인이 찍힙니다. 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한국어로만 발급되므로 신청자는 비자면접 전에 사실확인고 정확성을 보증하는 영문번역을 첨부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한국경찰신원조회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미국대사관은 더 이상 한국신원조회 신청서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2008년 1월1일부로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새로운 서류들을 해당 정부기관, 구청, 시청,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이름으로 모두 발급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서류는발급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분류됩니다.

- (1) 기본증명서
- (2) 가족관계증명서
- (3) 혼인관계증명서
- (4) 입양관계증명서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가족 관계에 따라 본인 외에 배우자, 부모(양부모 포함), 자녀(양자 포함)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개인의 출생일, 출생지, 개명사항, 그리고 사망에 관한 내용만 표시가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의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만 나타냅니다. 기존에 호주와의 관계에 따라 발급되던 호적등본은 제적등본 형식으로 계속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에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 호주와 가족 구성원의 출생, 결혼, 이혼, 입양, 사망,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가족관계상의 모든 기록이 나타납니다. 가족초청이민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이 있는 모든 이민 비자 신청자는 여전히 제적등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의 출생, 입양, 결혼, 이혼, 또는 사망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제적등본과 더불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 보증(I-864EZ/I-864W/I-864/I-864A 또는 I-134). 각 양식의 모든 지시사항을 잘 읽고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직계가족 및 우선순위 가족 경우: I-864와 I-864A는 초청자와 가족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연대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인과 그가족원이 자필로 서명한 I-864와 I-864A이어야 합니다. 각 I-864와 I-864A에는 서명자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증명, I-864 서명당시의 최근 연방 세금보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약혼자 및 Life 법령의 경우: I-134를 올바르게 서명하고 현재 지속되고있는 수입/자산 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 우선순위 고용의 경우: 주신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 나 I-864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후에 동반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I-134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자면접 예약. 모든 이민 비자 신청자 (약혼, Life 법령 비자신청자 포함)는 면접날짜를 인터넷 (http://www.asktheconsul.org/iv_appt.html)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자녀, 미망인(IR/CR/IW), 약혼자(K1), Life 법령(K3/V) 및 영주권 재입국(SB) 비자신청자에게는 면접날짜를 신청자의 케이스 번호와 함께 대략 4주 이내로 대사관 웹사이트 http://korean.seoul.usembassy.gov/appointment_dates.html 에 공고하겠습니다. 4주가 경과되기 전에는 재문의 하지 마십시오.

가족 우선순위 (F)나 고용 (E) 이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비자번호가 가능하면 미국대사관에서 미국무성에 귀하가 사용할 비자 번호를 신청해서 받은 후 대략 10주후에 면접날짜를 정하여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신청자가 이메일 주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F와 E비자 신청자들도 케이스 번호를 가지고 웹사이트 http://korean.seoul.usembassy.gov/appointment_dates.html 에서 면접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전화로는 면접날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실 수 없는 경우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을 첨부한 OF-169와 함께 대사관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복사본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 여권 만료일이 선명해야 합니다.

수수료. 각 직계가족, 우선순위 가족 및 고용신청자의 비자 요금은 비자당 400불(이민비자료 355불 + 부가금 45불)이며 현금(미국 달러나 원화), 우편환, 신용카드로 면접 일에 가져와야 합니다. 개인수표로는 비자요금을 낼 수 없습니다. 이민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비자요금을 내야하며,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비자요금 400불은 환불 받지 못합니다. 약혼자나 Life법령비자 신청자들은 131불을 신한은행에 내시고 영수증을 면접 일에 가져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10년 유효기간은 55,000원 5년 유효기간은 47,000원입니다. 신체검사료는 어른 150,000원, 15세 미만 어린이는 90,000원 입니다.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별도의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모든 신청자는 다음에 지정한 병원 중 한 곳에서 신체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여의도 성모 병원; 전화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전화 02-2210-3511;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번지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전화 02-2228-5808/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부산 메리놀 병원; 전화 051-461-2290;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 전화 031-219-5644/42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귀하는 귀하의 신체검사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 유효한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3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엑스레이를 큰 봉투에 봉인해서 줄 것입니다.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는 봉인한 채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B TB**일 경우는 검진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K/V 신청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 만기일에 따라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제한 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기록이 있거나, 현재까지 총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기록이 있다면 지정된 병원의 의사로부터 추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받으실때 의사에게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 신체검사와 동시에 추가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검진을 미리 받지 않으시면, 비자 면접 후에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한 병원으로 돌아가 검진을 받으도록 요청받으실 것입니다.

면접일. 모든 이민신청자는 선약을 해야지만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잘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전자 물품은 허락되지 않으며 귀하와 귀하의 소지품들은 조사 받게 됩니다. 비자면접시 귀하는 귀하의 신청서의 진실성에 대해 선서해야 합니다. 이날은 귀하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처음 심사하는 날이오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 비자발급이 확정되면 귀하의 비자를 택배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자를 받기 전에는 여행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각 신청자는 비자면접 일에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한 통씩 필요하나, 원본이 분실되거나 손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복사본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이 필요하시면 팩스로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비자 종류는 통보서 (Packet3 통보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K1/2	K3/4	V1/2	CR/IR	F	E	SB/IW	DV
X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6	6	6	8	8	8	8	8
DS-230, part 1	O	O	O	O	O	O	O	O
DS-230, part 2	X	X	X	O	O	O	O	O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2	2	1	X	X	X	X	X
비자신청서 첨부서류	DS-156K	X	DS-3052	X	X	X	X	X
출생, 사망, 입양, 결혼, 이혼증명서 또는 1년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한국 이민신청자)	O	O	O	O	O	O	O	O
구비서류	K1/2	K3/4	V1/2	CR/IR	F	E	SB/IW	DV
개봉 하지않은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O	O	O	O	O	O	O	O
예방접종 보고서	X	X	X	O	O	O	O	O
양식I-864EZ/I-864/I-864A와 서명자의 시민권자/영주권자 증명, 재정보증서 서명당시의 최근 세금보고서	X	X	X	O	O	X	X	X
재정보증서 I-134와 서명자의 현재 수입증명	O	O	O	X	X	X	O	X
앞면사진	2	2	1	1	1	1	1	1
경찰 증명서	O	O	O	O	O	O	O	O
공증한 고용확인서와 고용회사 현황 및 재정에 관한 보충서류	X	X	X	X	X	O	X	X
이전에 사용한 여권	O	O	O	O	O	O	O	O
군제대증 (한국 해당 없음), 체포, 수감기록 및 판결문, 미국이민서류를 보충하는 서류	O	O	O	O	O	O	O	O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서류	X	X	X	X	X	X	X	O
영어로 되지않은 모든서류의 영문번역	O	O	O	O	O	O	O	O
\$400 US 달러 또는 원	X	X	X	O	O	O	O	O
\$131 MRV 수수료 영수증	O	O	O	X	X	X	X	X
\$375 DV 비자 수수료	X	X	X	X	X	X	X	O
택배신청서	O	O	O	O	O	O	O	O

(O: 예, X: 아니오)

택배는 대사관에서 승인한 택배회사 DHL 일양 (전화, 1588-0002)이나 한진 (전화, 1588-0011)에서 합니다.

경고

Packet 3 발행일로부터 **2년** (K는 1년 그리고 SB/SE는 6개월) 이내에 이민비자수속을 하지 않으면 이민법 제 203(g) 조항에 의거하여 등록이 영원히 취소 됩니다. 주소를 변경하면 즉시 대사관에 서신으로 알려 주십시오. 비자를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동봉: 위에 설명한 양식들

s/pvu/iv/seofm/SEO 3.5 Oct2009